

의안
번호

19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0. 17.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윤주의원 외 7명

나. 의안번호 : 제192호

다. 제출일자 : 2023. 09. 26.

라. 회부일자 : 2023. 10. 12.

2. 제안이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스마트폰 등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어린이·청소년 다수가 문해력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이하“청소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임.

이에 성북구의회 의원 발의로서 청소년의회의 의견을 성북구 정책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서 “인터넷중독” 예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로 개정함.
- 나. 제명 개정 사항을 본문에 반영함.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
- 다. “인터넷중독”에 대하여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제2호)

4.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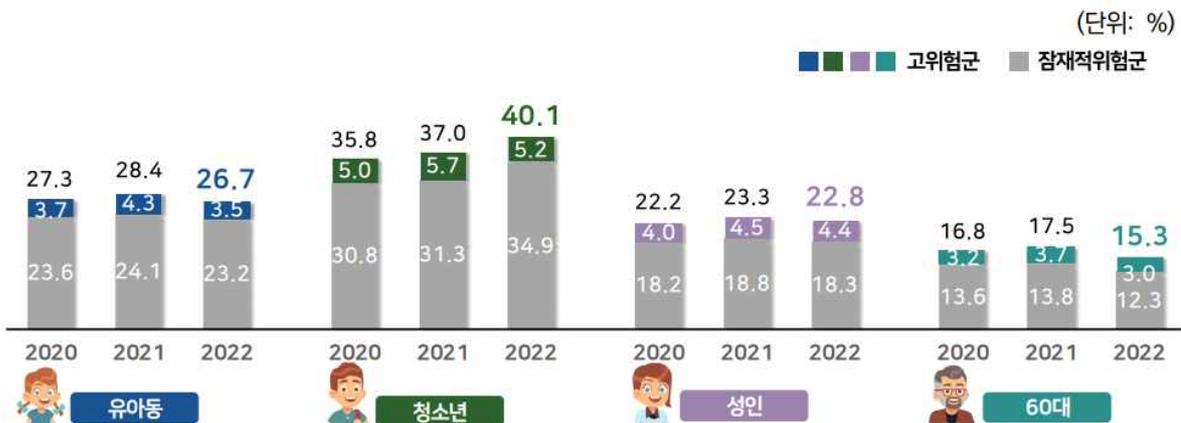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9. 26. ~ 2023. 10. 01.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27조를 근거로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1년에 제정되었으며, 인터넷게임 예방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방 교육 등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음.
- 개정안 내용은 현 조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까지 포함한 “인터넷중독” 예방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성북구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임.
-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23.6%로 전년(24.2%) 대비 0.6%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연령대별 과의존위험군 비율을 살펴보면, 유아동(만3~9세), 26.7%(-1.7%p), 성인(만20세~59세) 22.8%(-0.5%p), 60대 15.3%(-2.2%p)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그림 3-1-2] 연도별·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 대상별 연령대 : 유아동(만 3~9세), 청소년(만 10~19세), 성인(만 20~59세)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하지만 청소년들(만10~19세)의 인터넷 과의존도는 40.1%에 이르고 전년 대비 3.1% 상승하는 등 변화 추이를 볼 때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청소년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됨.

□ 주요 내용

- 먼저 개정 취지에 맞춰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중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인터넷중독 예방 사업 확대를 위해 현행 인터넷게임 중독 근거 법령인 「청소년 보호법」 제27조1)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자로 정의 규정을 변경하였음.

안 제2조제2호 정의 규정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2.“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2.“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 1)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개정안은 성북구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되며, 본 개정안은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됨.
- 다만,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일이 누락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부칙을 수정해야 할 것이며,

〈 부칙 수정안 〉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아울러,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²⁾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³⁾ 규정에 따라 서울시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됨.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2020.6.9.전부개정)으로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2021.5.21.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로 변경 됨.